# 마이데이터 본인인증

본 장은 마이데이터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시 전송요구의 행위가 고객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인증의 기본원칙과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개별인증의 세부적인 절차. 별도의 인증기관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통합인증을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4.1. 마이데이터 본인인증 개요

## 가. 본인인증 기본 원칙

○ (본인인증 목적) 정보제공자는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하여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해 반드시 본인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⑧ 제1항에 따라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본인인증 수행 주체) 본인인증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자가 수행한다.
- (인증 수단) 정보제공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인증 수단('나. 인증 수단' 참고)을 이용하여 고객 본인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증 수단 관리)** 고객이 인증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고시 책임소재) 인증수단과 관련된 사고의 원인행위제공여부에 따라 책임지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

#### 사고 원인별 과실여부에 따른 책임 예시(인증서 방식 기준)

- ① (고객과실) 인증서 비밀번호 타인 양도로 인한 문제발생 등
- ② (인증기관 과실) 인증서 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이 잘못된 경우, 인증서 유효성 검증 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문제발생 등
- ③ (정보제공자) 전자서명 검증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문제발생 등
- (인증 보안) 인증 정보의 입력, 전송, 보관, 관리 등 처리는 안전성 및 보안성이 확보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 (인증 방식) 고객이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별인증방식과 통합인증방식이 있다.
  - **(개별 본인인증)** 고객이 개별 정보제공자가 제공 또는 인정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각 정보제공자별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통합 본인인증) 고객이 통합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1회 인증 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 개인시용정보 전송요구 및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 (통합 인증기관) 고객에게 통합인증수단을 발급하고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통합인증수단 검증을 통해 공통의 고객 식별정보(CI정보)를 적법하게 제공 가능하며, 통합인증에 요구되는 충분한 보안수준을 갖춘 기관 중 별도의 절차에 따라 통합인증기관으로 참여한 기관

○ (인증 방식 제공) 정보제공자 및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편리한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인증방식 선택권을 고려하여.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인증은 기본으로 제공하되. 개별인증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참고) 본인인증 유형 비교

비교 기준	개별 본인인증	통합 본인인증
인증 수행 주체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
인증 수단 제공자	정보제공자, 제3의 인증기관 등	통합 인증기관
인증 수단	다중 인증 등*(정보제공자별 상이) * '나. 인증 수단' 참고	다중요소 공개키 인증서(PKI) * CI 제공 필요
인증 횟수 (고객 관점)	전송요구 대상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u>반</u> 복적 인증 수행	전송요구 대상 정보제공자의 수와 무관하게 <u>1회 수행</u>

- (인증 환경 제공)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른 본인인증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증기관 등은 인증방식에 따라 적절한 인증 환경(인증화면, S/W 모듈 등)을 구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개별 본인인증) 정보제공자 및 인증기관 등은 고객 본인인증을 위한 화면 등의 환경\* 을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일반적으로 웹 화면 및 별도 앱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증수단 발급 및 인증정보 입력 화면 등을 제공하여야 함.
  - \*\* 마이데이터서비스에서 인증화면을 직접 보여주거나, 인증화면을 호출
  - (통합 본인인증) 정보제공자, 인증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은 관련 규격에 따라 각 기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증환경을 직접 구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나. 본인인증 수단

○ 정보제공자는 다중인증. 다중요소 공개키인증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등과 같이 신뢰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고객 본인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인증 규격(가이드라인) 참고 사례

- 미국, 유럽, 국제표준기구 등의 주요 인증 규격(가이드라인)은 계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경우 다중인증 이상의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 수단을 적용 하도록 권고
- ※ (참고 3) 주요 인증 규격(가이드라인)의 인증 수준 요구 현황
- **(다중 인증)** 지식, 소유, 특징 기반 인증수단 중 소유 기반 인증수단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동시에 적용\*하되, 각 인증정보는 서로 분리된 환경에서 생성 및 전송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 \* (예시) ID/PW 인증(지식 기반) + SMS 인증(소유 기반)

## 예시 이증 요소별 인증수단 예시

- (지식 기반) ID/PW, 문답식인증, PIN 번호, 패턴 인증 등
- (소유 기반) OTP(One Time Password). 휴대폰 SMS 인증(자체 SMS 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등). 공개키 인증서, ARS 인증(신용카드 본인확인 등), 계좌 인증 등
- (특징 기반) 생체인증(지문, 홍채, 안면, 정맥 등), 서명 패턴 등
  - **(다중요소 공개키인증서)** 안전하게 생성·보호\*된 개인키 및 공개키 인증서로서, 인증 요구를 위한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키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정보 등)를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 \* H/W 및 S/W 기반 안전한 보호기술(SE, TZ, White Box 등) 적용 권고
  - \*\* (예시) 정보제공자 자체 발급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발급 인증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서를 이용.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①~⑦)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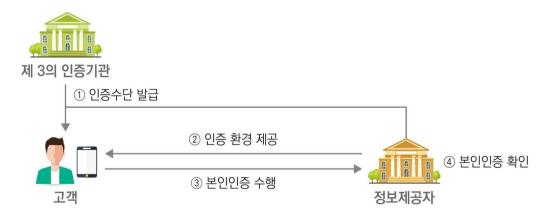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인증 등),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 (참고4)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다. 본인인증 절차

- 고객 본인인증은 '① 인증수단 발급'. '② 인증 환경 제공'. '③ 인증 확인·검증'. '④ 본인 인증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 ① (인증수단 발급) 고객은 인증수단을 정보제공자.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등록하다.
    - ①-가. **(개별인증 발급 절차)** 통상 고객은 정보제공자 회원가입 시에 정보제공자. 또는 제3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수단을 발급받아 등록한다.
      - \* 세부 절차 등은 각 정보제공자가 전송요구 편의성, 안전성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 (1)-나. **(통합인증 발급 절차)** 고객이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최초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합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수단을 발급한다.\*
      - \* 통합인증은 별도의 인증서 등록절차(예: 타행인증서 등록) 불필요
  - ② (본인인증 환경 제공)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사업자, 제3의 인증기관은 고객에게 본인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화면 등)을 제공한다.

- ②-가. **(개별인증 환경 제공)** 정보제공자가 앱 또는 웹화면의 형태로 제공한다.
- ②-나. **(통합인증 환경 제공)**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이 앱 또는 웹화면의 형태로 제공한다.
- ③ (본인인증 수행) 고객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수행한 결과를 정보제공자에게 전달한다.
  - ③-가. **(개별인증 수행 절차)**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자의 인증 환경을 통해 인증수단을 입력 및 제출한다.
  - ③-나. (통합인증 수행 절차)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인증 환경을 통해 인증수단을 선택 및 입력하여 제출한다.
- ④ (본인인증 확인)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인증 요구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고객의 정보주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 〈 본인인증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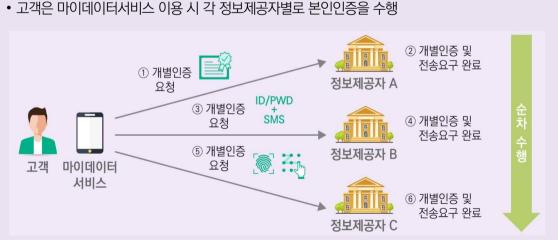


## 4.2. 개별인증

- (개별인증) 고객은 정보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수단 및 환경을 이용하여 개별인증을 수행한다.
  - (개별 인증수단) 정보제공자는 인증 신뢰성과 고객의 인증 편의성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 라인('나, 인증 수단')을 참고하여 각사가 지율적으로 개별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 개별인증의 특성에 따라 다수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인증수단(예: 공동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각 정보제공자별로 순차적으로 인증을 수행
  - (개별인증 인터페이스) 정보제공자는 제공 인증수단의 특성 및 인증 절차상의 정보 보호 수준등을 고려하여 개별인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인증 인터페이스의 유형(웹 화면, 별도 앱 등)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반드시 인터 페이스 호출을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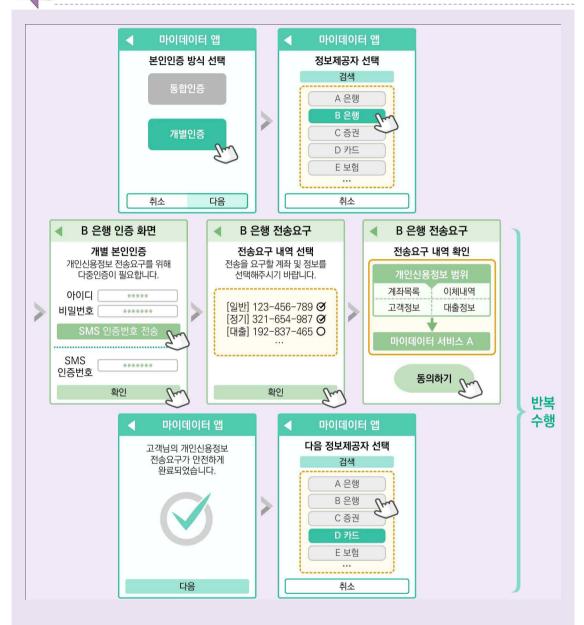
#### 예시 개별 본인인증 절차 개요

- 각 정보제공자는 각자의 인증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객을 인증



## 예시

## 개별 본인인증 절차(고객 관점)



※ 본 그림은 예시이며, 정보제공자 선택 및 개별인증 수행화면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개별인증 API관련 세부 절차 및 기술 규격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4.3. 통합인증

- **(통합 본인인증)** 고객은 통합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수단(통합인증수단)을 이용하여 1회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일괄적으로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 **(통합인증수단)** 통합 인증기관은 모든 정보제공자가 공통적으로 고객을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결과로서 CI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중요소 공개키인증서를 고객에게 발급한다.
  -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방통위 고시)'의 '연계정보'
  - **(통합인증 환경)**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통합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인증을 요구(전자서명 생성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선택\* 및 입력 화면 등 일체를 자율적으로 구성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 및 통합 인증기관은 인증수단 전송 및 검증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 인증수단 선택화면은 향후에 필요한 경우 표준창 형태로 제공 가능
  - \*\* 정보제공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인증수단을 전송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은 정보제공자가 인증수단의 검증·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인증을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조).

## 통합인증 환경 제공시 고려사항

- (인증수단 선택권 보장)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통합인증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이 통합인증수단을 선택 가능하도록 인증수단 선택 화면 등을 구성해야만 하며,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통합인증 수단의 선정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자율로 한다. 단, 공동인증서는 기본제공하되그 외 인증서는 최소 1개 이상 적용한다. (단,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자체인증서 제외)
- (인증정보 보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인증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키패드, 앱 위변조 탐지, 백신 등 필요한 보호 대책 적용하여야 한다.

## 예시

## 통합 본인인증 절차 개요

- 고객은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 시 1회 인증으로 동시에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인증 수행
- 각 정보제공자는 통합인증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객을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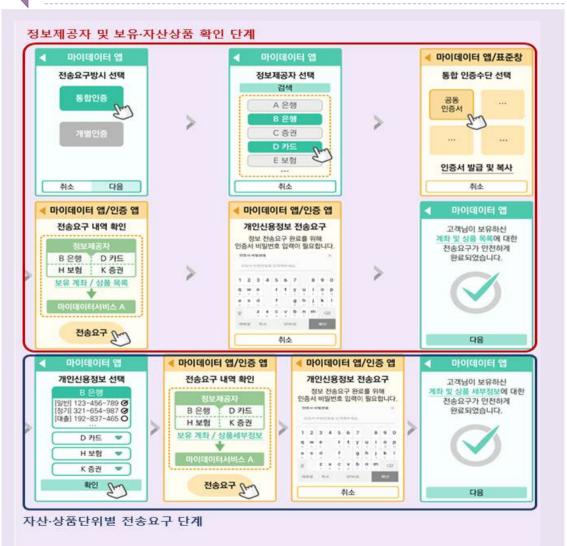
## (참고) 통합 본인인증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역 할
마이데이터사업자	인증수단 및 전송요구내역 선택화면 구성·제공, 전자서명 생성 및 전송 등
정보제공자	전자서명 검증 및 고객 인증 등
통합 인증기관	인증수단 발급, 인증서 검증 등

- (통합 본인인증 절차) 통합 본인인증은 고객이 가입한 정보제공자 및 보유자산·상 품을 확인하는 단계와 자산·상품단위별 전송요구를 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 (보유자산·상품 확인 단계 생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자산·상품 정보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기수집된 정보 등) 보유자산·상품 확인 단계를 생략하고 자산· 상품단위별 전송요구를 수행하여도 된다.

- (자산·상품 전송 요구 시 개수 제한) 전송요구대상 자산·상품의 수가 상당히 많은 일부 고객은 전송요구시 자산·상품 개수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최대 7천바이트로 계좌 기준 약 200개), 제한을 넘게될 경우 개별선택없이 전체 자산·상품 선택으로 대체
- ※ 통합인증 세부 절차 및 기술 규격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절차 및 규격」을 참고

# 통합 본인인증 절차(고객 관점)



※ 본 그림은 예시이며, 정보제공자 선택 및 개별인증 수행화면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향후, 필요시 표준창 형태의 인증수단 선택화면 제공 가능)

## 정보제공자 선택 화면 구성시 고려사항

• (1회 전송요구시 일괄 선택가능한 정보제공자 수 제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 제공자 일괄선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일괄선택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선택은 기관코드 기준으로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한 금융회사가 여러 개의 기관코드를 보유한 경우 각각의 기관코드별로 하나의 정보제공자로 봄). 여러번에 나누어 일괄선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일괄선택 기능으로 선택하는 정보제공자는 합하여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고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 구성한 정보제공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가·수정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이 각 정보제공자를 개별적으로 추가 선택한 경우에는 50개 초과가 가능 하다.

# 4.4. 중계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 정보제공자가 중계기관을 통해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인증은 각 정보제공자가. 통합인증은 중계기관이 수행한다.
  - **(개별인증)** 고객이 개별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수행할 경우, 각 정보제공자가 고객인증을 직접 수행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인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중계기관이 제공하는 통합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관련된 세부절차는 중계기관(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통합인증)** 고객이 통합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수행할 경우, 중계기관은 고객이 인증수행 결과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고,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각 정보제공자는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다.